투자자간계약서

주식회사 이원

한국플랜트서비스 주식회사

메리츠경북에너지 주식회사

2024. 9. 4.

경북에너지 주식회사 투자자간계약서



목차

제1	장 총	칙	4
	제1조	용어의 정의	4
제2	장 본	건 SPC에 대한 출자 및 본건 SPC의 운영	6
	제2조	본건 SPC에 대한 출자 및 대출	6
	제3조	임원 및 이사회	7
	제4조	주주총회1	1
	제5조	본건 SPC의 준수사항1	.2
	제6조	본건 SPC의 합병1	.2
제3	장 대	상회사의 운영1	2
	제7조	임원 및 이사회1	.2
	제8조	주주총회1	6
	제9조	대상회사의 준수사항1	.7
제4	장 주	·식 등의 양도1	7
	제10조	주식 등의 양도 제한1	. 7
	제11조	메리츠의 풋옵션(Put Option)2	20
	제12조	E1의 풋옵션(Put Option)2	!1
	제13조	HPS의 콜옵션(Call Option)2	22
제5	장 기	타 확약사항 등	:3
	제14조	본건 SPC의 운영 등	23
	제15조	본건 거래 관련 비용의 정산2	23



제6장 진술	울 및 보장	23
제16조	진술 및 보장	23
제7장 계약	· 우의 효력기간 및 손해배상	25
제17조	계약의 효력 및 종료	25
제18조	손해배상	26
제8장 일번	반조항	26
제19조	비밀유지	26
제20조	기타 규정	28
별첨 2.2(3)		1
벽 첨 2.3		1

투자자간계약서

본 투자자간계약("<u>본 계약</u>")은 2024년 9월 4일("<u>본 계약 체결일</u>")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한강로2가)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이원("E1")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34층(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에 본점을 둔 한국플랜트서비스 주식회사("HPS")
-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아이에프씨동 22층, 24-27층(여의도동)에 본점을 둔 메리츠경북에너지 주식회사("<u>메리츠</u>", E1, HPS 및 메리츠를 총칭하여 "<u>투</u>자자들", 개별적으로 "투자자")
-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34층(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에 본점을 둔 경북에너지 주식회사("<u>본건 SPC</u>", 투자자들과 본건 SPC를 총칭하여 "<u>당사</u>자들", 개별적으로 "당사자")

전 문

- 1.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4길 118-10에 본점을 둔 김천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u>대상회</u> <u>사</u>")는 열병합발전을 통한 전력과 열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 2.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대상회사는 1주당 액면금액 오천(5,000)원의 보통주식 14,000,000주를 발행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여의도동)에 본점을 둔 하나파워패키지 유한회사("<u>하나파워패키지</u>")가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전 부("본건 주식")를 소유하고 있다.
- 3. E1, 주식회사 칼리스타캐피탈, HPS 및 메리츠증권 주식회사는 2024년 2월 15일 대상회사, 평택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및 전북집단에너지 주식회사 인수를 공동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하나파워패키지 지분 인수를 위한 Term Sheet"를 체결하였다.
- 4. 투자자들은 HPS가 대상회사 주식 소유를 목적으로 설립한 본건 SPC에 공동으로 투자하고, 본건 SPC는 2024년 6월 17일 하나파워패키지와 사이에 체결한 본건 주식의 매매에 관한 주식매매계약("본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본건 주식 전부를



매수하고자 한다(본건 SPC에 대한 공동 투자와 본건 주식 매수를 총칭하여 "<u>본건</u> 거래").

5. E1, HPS, 메리츠증권 주식회사는 2024년 6월 17일 본건 거래에 관한 사항과, 본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거래종결") 이후 본건 SPC 및 대상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본건 SPC 발행 주식 등의 소유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투자자간계약("기존 투자자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사자들은, 메리츠가 메리츠증권 주식회사로부터 기존 투자자간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이전 받고, 본 계약 제2.2조에 따른 당사자들의 인수대금이 확정됨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계약의 체결로 기존 투자자간계약을 대체하기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용어의 정의

1.1 <u>정의</u>.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거나 문맥상 명백히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를 말한다.

"<u>내부수익률(IRR)</u>"이란 (i) 투자자가 본건 SPC가 발행한 주식 등(이하 정의됨)을 인수하기 위해 납입한 원금을 음수로 하고, (ii) 투자자가 본건 SPC의 투자자지위에서 수령한 모든 금액(주식 등의 매각 또는 상환 대금, 배당금, 감자대금 등을 포함하여 투자자의 자격에서 지급받은 금원을 의미함)을 양수로 하여, 주식등의 납입일부터 각 지급 및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이자율로 할인하였을 때 (i)과 (ii)의 현재가치의 합산액이 영(0)이 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u>법령</u>"이란 각 해당 시점에 있어 유효하게 시행 중이고, 법규적 효력이 있는 헌법, 법률, 조약, 협약, 명령, 규칙, 조례, 규정, 시행세칙, 기타 정부기관에 의하여 제정 및 시행된 모든 규정과 규칙 등을 의미한다.

"<u>세금</u>"이란 정부기관이 부과하거나 정부기관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관세 기타모든 종류의 세금과 이에 대한 가산세, 가산금, 벌금, 추징금, 과징금, 원천징수세,



이자 기타 관련 부대비용을 의미한다.

"<u>영업일</u>"이란 대한민국에서 시중은행이 영업을 위하여 개점한 날(즉, 대한민국의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완전 희석화 기준"이란 본건 SPC의 발행주식총수와 지분비율(이하에서 정의) 산정 시점에 주식연계증권(이하에서 정의)에 따른 전환권, 신주인수권 기타 본건 SPC에 주식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행사된 것을 가정하였을 때 본건 SPC의 주식 전부를 합산하여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기관"이란 대한민국 또는 외국(각 국가의 중앙정부, 연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주정부 등을 포함)의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과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나 이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기능을 하는 자(중재기관, 증권거래소 등을 포함함)를 의미한다.

"제한부담"이란 소유권, 수익권, 사용권, 의결권, 처분권 등 각종 권리에 대한 모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제한을 의미하며, 담보물권, 용익물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또는 Right of First Offer), 풋옵션, 콜옵션, 환매특약,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동반매각요구권(Drag-along Right) 등 주식 양도에 대한 제한, 각종 선택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속을 포함한다.

"주식 등"이란 (i) 주식 및 (ii)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선택권 등 어느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교환되거나 그 주식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증권, 권리, 옵션 등("주식연계증권")을 의미한다.

"<u>지분비율</u>"이란 완전 희석화 기준으로 어느 투자자가 소유한 본건 주식회사 주식 등의 총수를 그 당시 본건 SPC의 발행 주식 등의 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1.2 해석.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i) 본 계약에서 언급된 본 계약, 기타합의 또는 서류는 그것들이 유효하게 변경, 수정 또는 보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ii) 본 계약에서 "포함한다"는 취지의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포함하되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병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되며, (iii) 단수로 쓰인 용어는 복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반대도 또한 같으며, (iv) 본 계약에서 언급된 일수는 명시적으로 "영업일"이라 표시하지 않는 한 달력 상



의 일수를 의미한다. 본 계약에 언급된 별지, 별표와 별첨은 그 내용이 본 계약에 그대로 서술된 것 같이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본 계약 상 각 조항의 표제 는 오로지 편의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본 계약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장 본건 SPC에 대한 출자 및 본건 SPC의 운영

제2조 본건 SPC에 대한 출자 및 대출

본건 SPC에 대한 1차 출자. 2.1

당사자들은 본건 SPC가 본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본건 보증 보험") 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본건 SPC가 발행하는 신주를 아래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

주주	종류	1주당 발행가액	인수주식수	인수대금	인수 후 지분율
HPS	보통주식 (기발행분)	_	1,280주	333,000,200원	100%
합계			1,280주	333,000,200원	100%

2.2 본건 SPC에 대한 2차 출자.

본건 SPC가 본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하나파워패키지에 지급할 잔금 및 (1)본건 거래와 본건 SPC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 도록, 투자자들은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거래종결일")의 1 영 업일 전까지 각 투자자 별로 본건 SPC가 발행하는 신주를 아래와 같이 인수 및 납입한다. 이와 관련하여, (x) 메리츠가 인수하는 의결권부 비누적 적 참가적 우선주식("제1종 우선주식")의 조건은 본건 SPC와 메리츠 사이 에 본 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제1종 우선주식인수계약에 따르고, (y) 메리 츠가 인수하는 무의결권부 비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제2종 우선주식", 제1종 우선주식과 제2종 우선주식을 총칭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조건은 본건 SPC와 메리츠 사이에 본 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제2종 우선주식인수 계약에 따른다.

	arro 📢 filos (1.60) antidos en dade (1.6 priores) (aprecio a 2.7	 In the August Control of Angeles and Control of the Control of the Control of August Cont
_ ^	1 01/2/21/2	
	· · · · · · · · · · · · · · · · · ·	
주주 종류 1주당	인수주식수	인수대금 인수 후
	78 7 178 4 - THE RESERVE OF THE PROPERTY OF TH	



		발행가액			지분율 (의결권 기 준)
TO ALL TO A CONTRACT OF THE ACT O	보통주식	-	1,280주	333,000,200원	70.0%
HPS	(기발행분)				
пгэ	보통주식	1,016,526원	57,307주	58,254,055,482원	
	(신주)				
E1	보통주식	1,000,000원	9,206주	9,206,000,000원	11.0%
	제1종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우선주식	1,000,000원	15,902주	15,902,000,000원	19.0%
메리츠	(의결권)				
베니스	제2종				
	우선주식	1,000,000원	27,898주	27,898,000,000원	_
	(무의결권)				
합계			111,593주	111,593,055,682 원	100%

- (2) <u>제(1)항</u>에 따른 출자 이후, 본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등으로 거래종 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투자자들은 그 사유 발생후 지체 없이 본건 SPC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u>제(1)항</u>의 출자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기한이익을 포기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 (3) 당사자들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본건 SPC의 정관이 <u>별첨 2.2(3)</u>과 같음을 확인한다. 본 계약과 본건 SPC의 정관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본 계약이 우선하며, 이 경우 투자자들은 본 건 SPC로 하여금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게 하고 해당 주주총 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결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3 본건 SPC에 대한 인수금융

투자자들은 본건 SPC가 본건 거래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인수금융 목적으로, <u>별첨 2.3</u>과 같은 내용과 양식으로 대출약정서(이하 "<u>본건 대출약정서</u>")를 체결하였음을 이해하고 확인한다.

제3조 임원 및 이사회



3.1 임원의 선임.

- (1) 본건 SPC의 이사는 3인으로 한다. 이 중 이사 2인은 HPS가 지명하고,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 1인은 E1이 지명한다. 다만, E1이 보유한 본건 SPC 보통주식이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HPS가 이사 2인을 지명하고, 메리츠가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지명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 (2) 본건 SPC는 1인의 대표이사를 두고, HPS가 이를 지명한다.
- (3) 본건 SPC는 1인의 감사를 두고, E1이 이를 지명한다. 단, E1이 보유한 본 건 SPC 보통주식이 <u>제10조</u>, <u>제12조</u> 및 <u>제13조</u>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각이 완료되는 경우 HPS가 감사 1인을 지명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 (4) 투자자들은 <u>제(1)항</u> 내지 <u>제(3)항</u>에 따른 본건 SPC 임원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또는 각자 지명한 이사들로 하여금 주주총회 및/또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해당 주주총회 및/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임원의 교체.

- (1) 각 투자자는 자신이 지명권을 가지는 한, 자신이 지명한 임원이 임기만료, 사임, 해임, 유고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되는 경우 그 후임자를 지명할 권 리가 있고, 언제든지 자신이 지명한 임원을 해임 또는 교체할 권리를 갖 는다.
- (2) 제(1)항에 따라 어느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지명한 임원의해임이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들은 해당 요청이 적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각자 지명한 이사들을 통해 주주총회 및/또는이사회 소집을 포함한 필요한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하고, 주주총회 및/또는이사회 소집통지의 생략이나 기간 단축에 대해 동의하는 등 최대한 협력하며, 해당 주주총회 및/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각 투자자는 자신이 지명한 임원의 해임 또는 교체로 인하여 제기되는 법 적 절차, 손해배상청구 등으로부터 본건 SPC 및 다른 투자자들을 면책하 여야 한다.



3.3 임원의 임기 및 보수.

- (1) 본건 SPC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건 SPC의 이사의 임기 가 최종 회계연도 종료 후 당해 회계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 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2) 본건 SPC의 감사의 임기는 3년 내 최종 회계연도 종료 후 당해 회계연도 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3)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건 SPC 는 이사 및 감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3.4 이사회의 운영.

- (1) 본건 SPC의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일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사전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소집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2) 본건 SPC의 이사회는 상법 기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본건 SPC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결의할 권한을 가지며, 이사회 결의요건은 상법 기타 관련 법령, 정관 및 <u>제(3)항</u>과 <u>제(4)항</u>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3) <u>제(2)항</u>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i) 정관의 변경
 - (ii) 주식 또는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또는 부여
 - (iii) 주식의 분할, 병합, 종류의 변경
 - (iv)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나 중요한 영업용 자산의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 는 일부의 양수
 - (v)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공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



래가 아닌 본건 SPC와 대상회사의 계열회사, 주주, 임직원 및/또는 그 각각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vi) 대상회사 주식 보유를 위한 지주사업 외 신규 사업의 추진, 사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포기, 중단 또는 기존 사업의 중요한 변경
- (vii) 해산 또는 청산, 파산 또는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
- (viii) 법령상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 (ix) 법령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 (x) <u>제7.4조 제(3)항</u>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본건 SPC의 의결권 행사 내용 의 결정
- (4)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i) 제3자 배정 방식의 주식 또는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또는 부여
 - (ii) 특정 투자자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는 주식의 분할, 병합, 종류의 변경
 - (iii) 특정 투자자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는 배당, 자본 감소, 자 기주식 취득 기타 자본의 환급
 - (iv) <u>제7.4조 제(4)항</u>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본건 SPC의 의결권 행사

3.5 기타 사항.

(1) 투자자들은, 본건 대출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HPS가 본건 SPC의 본건 대출약정상 대출원리금(지연이자를 포함함)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하여 본건 SPC에 대한 출자(유상증자) 또는 (본건 대출약정상 대주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 대여 방식으로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는데 대하여 동의하며, 본건 SPC의 위와 같은 유상증자 또는 주주대여를 승인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및 절차(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 절차, 결의 절차



등 포함)의 이행에 적극 협조한다.

- (2) 투자자들은 본건 대출약정서상 6번째로 도래하는 이자지급일(당일포함) (이하 "Cash Sweep 기간") 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1종 우선주식,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당하는 것 외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본건 대출약정서에 따른 상환(중도상환 포함) 목적으로만 대상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사용하기로 한다.
- (3) 투자자들은 (i) Cash Sweep기간이 경과하였고 (ii) 본건 SPC가 본건 대출약 정서상 재무약정 및 제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본건 합병(이하에서 정의됨) 전 본건 SPC에 회계연도말 배당가능이익 및 잔여 현금(명확히 하면, 본건 SPC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및 현금을 의미함)이 있는 경우, 본건 SPC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최대한 배당하는 데에 동의하고, 본건 SPC의 배당을 승인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및 절차(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절차 등 포함)에 적극 협조한다.
- (4) 각 투자자는 본 계약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본 계약의 이행이나 준수를 위하여 또는 투자자들 사이에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본건 SPC 주주총회 및/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각자 지명한 이사들로 하여금 주주총회 및/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주주총회

- (1) 본건 SPC의 주주총회는 (i) 매 사업연도별 1회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와 (ii) 이사회 결의로 수시로 소집되는 임시주주총회로 구분한다.
- (2) 본건 SPC의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주주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 전원의 사전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 외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방식으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3) 본건 SPC의 주주총회 결의 사항 및 결의 요건은 상법 기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본건 SPC의 준수사항

당사자들은 메리츠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메리츠의 사전 서면동 의로 아래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본건 SPC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u>이사회 관련 서류 제공</u>: 본건 SPC의 이사회 소집시 지체없이 메리츠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 사본 및 기타 첨부 서류(이사회 부의 자료 등)를 제공하며, 이사회 결의시 지체없이 메리츠에게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제공한다.
- (2) <u>주주총회 관련 서류 제공</u>: 본건 SPC의 주주총회 소집시 지체없이 메리츠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사본 및 기타 첨부 서류(안건설명자료 등)를 제공하며, 주주총회 결의시 지체없이 메리츠에게 주주총회의사록(서면결의서 포함) 사본을 제공한다.
- (3) <u>통지</u>: 본건 SPC 또는 대상회사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나 소송, 감독기관 등 정부유관단체의 조사나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 그 사실에 대해 메리츠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6조 본건 SPC의 합병

투자자들은, 관련 법규나 규정의 위반이 없는 한, 거래종결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상회사를 존속회사로 하여 대상회사와 본건 SPC를 합병("본건 합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고, 대상회사 및 본건 SPC의 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건합병을 승인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및 절차(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절차 등 포함)를 이행하는 데에 적극 협조한다.

제3장 대상회사의 운영

제7조 임원 및 이사회

7.1 임원의 선임.

(1) 대상회사의 이사는 3인으로 한다. 이 중 이사 2인{최고재무책임자(CFO) 1 인 포함}은 HPS가 지명하고,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 1인은 E1이



지명한다. 다만, E1이 보유한 본건 SPC 또는 대상회사 보통주식이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HPS 가 이사 2인을 지명하고, 메리츠가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지명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 대상회사는 1인의 대표이사(CEO)를 두고, HPS가 이를 지명한다. (2)
- 대상회사는 1인의 감사를 두고, E1이 이를 지명한다. 단, E1이 보유한 본건 (3) SPC 또는 대상회사 보통주식이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각이 완료되는 경우 HPS가 감사 1인을 지명하는 것으로 변경 하다.
- 투자자들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대상회사 임원 선임이 이루어질 (4) 수 있도록 본건 SPC 또는 각자 지명한 이사들로 하여금 주주총회 및/또 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해당 주주총회 및/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2 임원의 교체.

- 각 투자자는 자신이 지명권을 가지는 한, 자신이 지명한 임원이 임기만료, (1) 사임, 해임, 유고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되는 경우 그 후임자를 지명할 권 리가 있고, 언제든지 자신이 지명한 임원을 해임 또는 교체할 권리를 갖 는다.
- 제(1)항에 따라 어느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지명한 임원의 (2) 해임이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들은 해당 요청이 적시에 실 현될 수 있도록 본건 SPC 또는 각자 지명한 이사들로 하여금 주주총회 및/또는 이사회 소집을 포함한 필요한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하고, 주주총 회 및/또는 이사회 소집통지의 생략이나 기간 단축에 대해 동의하는 등 최대한 협력하며, 해당 주주총회 및/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 사하거나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각 투자자는 자신이 지명한 임원의 해임 또는 교체로 인하여 제기되는 법 (3) 적 절차, 손해배상청구 등으로부터 대상회사 및 다른 투자자들을 면책하 여야 한다.

7.3 임원의 임기.



- (1) 대상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상회사의 이사의 임기 가 최종 회계연도 종료 후 당해 회계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 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2) 대상회사의 감사의 임기는 3년 내 최종 회계연도 종료 후 당해 회계연도 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3) 투자자들은 대상회사로 하여금 대상회사의 비용으로 대상회사의 등기 임원에 대하여 해당 임원의 대상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한다.

7.4 이사회의 운영.

- (1)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일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사전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2)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상법 기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대상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결의할 권한을 가지며, 이사회 결의 요건은 상법기타 관련 법령, 정관 및 제(3)항과 제(4)항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3) <u>제(2)항</u>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i) 정관의 변경
 - (ii) 주식 또는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또는 부여
 - (iii) 유상 또는 무상감자 기타 자본의 감소
 - (iv)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나 중요한 영업용 자산의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 는 일부의 양수



- (v) 주식의 분할, 병합, 종류의 변경
- (vi) 배당, 자기주식 취득 기타 자본의 환급
- (vii)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공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가 아닌 본건 SPC와 대상회사의 계열회사, 주주, 임직원 및/또는 그 각각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viii) 사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포기, 중단 또는 기존 사업의 중요한 변경
- (ix) 대상회사와 HPS가 체결하는 관리운영위탁계약의 변경, 해지 또는 제3자와의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체결
- (x) 건별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상회사의 자산의 취득이나 매각, 자금 차입, 담보 또는 보증의 제공
- (xi) 해산 또는 청산, 파산 또는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
- (xii) 법령상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 (xiii) 법령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 (4)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i) 제3자 배정 방식의 주식 또는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또는 부여
 - (ii) 특정 투자자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는 주식의 분할, 병합,종류의 변경
 - (iii) 특정 투자자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는 배당, 자본 감소, 자 기주식 취득 기타 자본의 환급

7.5 기타 사항.

(1) 투자자들은 Cash Sweep기간 중에는 대상회사(본건 합병 후에는 존속회사 로서의 대상회사를 의미함)가 제1종 우선주식,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 선배당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당하는 것 외에는 본건 대출약정서에 따른



상환(중도상환 포함) 목적으로만 배당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한다. 명확히하면, 대상회사에 회계연도말 배당가능이익 및 잔여 현금(명확히 하면, 대상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및 현금을 의미함)이 있는 경우, 대상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명확히 하면, 시설 등의 투자나보수에 소요되거나 이를 위하여 유보하는 자금을 포함함)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최대한 배당하는 데에 동의하며, 대상회사의 배당을 승인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및 절차(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 절차, 결의 절차 등 포함)의 이행에 적극 협조한다.

- (2) 투자자들은 (i) Cash Sweep기간이 경과하였고 (ii) 대상회사가 본건 대출약 정서상 재무약정 및 제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대상회사에 회계 연도말 배당가능이익 및 잔여 현금(명확히 하면, 대상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및 현금을 의미함)이 있는 경우, 대상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명확히 하면, 시설 등의 투자나 보수에 소요되거나 이를 위하여 유보하는 자금을 포함함)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최대한 배당하는 데에 동의하며, 대상회사의 배당을 승인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및 절차(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 절차, 결의 절차 등 포함)의 이행에 적극협조한다.
- (3) 각 투자자는 본 계약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본 계약의 이행이나 준수를 위하여 또는 투자자들 사이에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대상회사 주주총회 및/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본건 SPC 또는 각자 지명한 이사들로 하여금 주주총회 및/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주주총회

- (1) 대상회사의 주주총회는 (i) 매 사업연도별 1회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와 (ii) 이사회 결의로 수시로 소집되는 임시주주총회로 구분한다.
- (2) 대상회사의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주주총 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 전원의 사전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를 생략 하거나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 외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 는 방식으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3) 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사항 및 결의 요건은 상법 기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대상회사의 준수사항

당사자들은 메리츠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메리츠의 사전 서면동의로 아래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대상회사로 하여금 아래 각 호의 준수사항을 준 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u>이사회 관련 서류 제공</u>: 대상회사의 이사회 소집시 지체없이 메리츠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 사본 및 기타 첨부 서류(이사회 부의 자료 등)를 제공 하며, 이사회 결의시 지체없이 메리츠에게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제공한다.
- (2) <u>주주총회 관련 서류 제공</u>: 대상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시 지체없이 메리츠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사본 및 기타 첨부 서류(안건설명자료 등)를 제공하며, 주주총회 결의시 지체없이 메리츠에게 주주총회의사록(서면결의서 포함)을 제공한다.
- (3) <u>통지</u>: 대상회사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나 소송, 감독기관 등 정부유관단체의 조사나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 그 사실에 대 해 본건 사채권자들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4장 주식 등의 양도

제10조 주식 등의 양도 제한

10.1 <u>투자자들의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제한</u>

(1)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투자자는 거래종 결일로부터 7년("양도제한기간") 동안 다른 투자자들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다만, 이러한 동의는 불합리하게 거부되어서는 아니됨) 없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SPC 발행 주식 등(본건 우선주식을 포함하고, 신주의 발행, 주식의 분할, 주식병합,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을 포함함. 제10조에서 같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 양도, 증여 기타 처분(총칭하여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확히



하면, 본건 합병 이후에는 대상회사 발행 주식 등에 대하여 본 항에 따른 양도제한기간을 적용하기로 한다.

- (2) 투자자는 <u>제(1)항</u>에도 불구하고, (i) <u>제12</u>조 또는 <u>제13</u>조에 따른 경우 또는 (ii)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i) 어느 투자자가 계열회사(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동일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들을 계열회사로 간주함)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수인이 본 계약(본건 우선주식인수계약 등 해당 양수인이 본 계약에 기초하여 체결한 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본 제10조 전체적으로 같음)상 지위,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해당 투자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을 전부 양수하는 경우)하거나, 또는 해당 투자자와 본 계약상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고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해당 투자자가 보유하는 본건 SPC 주식 등을 일부 양수하는 경우)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경우
 - (ii) E1 및 메리츠가 <u>제10.2조</u>의 우선매수권 절차를 거쳐 각자 보유하고 있는 본건 SPC 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잠재적 양수인이 본 계약상 지위,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해당 투자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을 전부 양수하는 경우)하거나, 또는 해당 투자자와 본 계약상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고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해당 투자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을 일부 양수하는 경우)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경우

10.2 <u>투자자들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u>

(1) 제10.1조 제(2)항 제(i)호에 따른 계열회사 간 양도를 제외하고, 어느 투자 자("양도당사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SPC 발행 주식 등(명확히 하면, 본건 합병 이후에는 대상회사 발행 주식 등을 의미함)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대상주식")를 제3자("잠재적 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명확히 하면, 양도제한기간 내에는 다른 투자자들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그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함), 사전에 (i) 그와 같은 주식 등 양도의 의사, 잠재적 양수인의 이름·상호, 양도대상주식의 수, 양도대금(1주당 양도가액 포함, "주요 양도조건")을 명시한 서면("양도예정통지")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ii) 잠재적 양수인으로 하

여금 본 계약상 양도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잠재적 양수인이 모두 승계(양 도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을 전부 양수하는 경우)하거나, 또는 양도당 사자와 본 계약상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고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양도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을 일부 양수하는 경우)한다는 취지의 확약서 를 작성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양도당사자의 양도예정통지에 따라 다른 투자자들(개별적으로 "<u>우선매수</u> 권자")은 양도대상주식을 직접 주요 양도조건으로 우선매수할 권리("<u>우선 매수권</u>")를 가진다. 양도당사자로부터 양도예정통지를 받은 다른 투자자들은 양도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u>우선매수권행사통지기간</u>") 이 내에 양도당사자에게 양도대상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서면("<u>우선매수권행사통지</u>")으로 통지할 수 있다.
- (3) 우선매수권행사통지를 한 우선매수권자("<u>우선매수권행사자</u>")가 다수인 경우 양도당사자는 그 사실을 즉시 각 우선매수권행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우선매수권행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시 우선매수권행사자들 사이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대상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한다.
- (4) 제(2)항의 경우에는 우선매수권행사통지가 양도당사자에게 도달한 날, 제(3)항의 경우에는 양도당사자의 서면 통지가 각 우선매수권행사자에게 도달한 날에, 양도당사자와 우선매수권자 사이에 해당 양도대상주식에 대하여 주요 양도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우선매수권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양도대상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양도당사자는 그와 동시에 우선매수권자에게 해당 양도대상주식을 여하한 제한부담이 없는 상태로 양도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라 (i) 양도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전부가 어느 하나의 투자자에게 양도된경우 해당 양도당사자의 본 계약상 권리·의무는 해당 투자자에게 양도된경우 해당 양도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이 일부씩 복수의 투자자에게양도된경우에는 당사자들은 그 양도에 따라 변경된 지분구조를 비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내용으로 본 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5) 우선매수권자 전부가 <u>제(2)항</u>에 따른 우선매수권행사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당사자는 우선매수권자 전부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그 다음날부터 30일("<u>양도기한</u>") 이내에, 주요 양도조건보다 잠 재적 양수인에게 더 유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그리고 잠재적 양수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상 양도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잠재적 양수인이 모두 승계



(양도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을 전부 양수하는 경우)하거나, 또는 양도 당사자와 본 계약상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고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양도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을 일부 양수하는 경우)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대상주식을 양도예정통지에 기재된 잠재적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잠재적 양수인의 양도 거래가 양도기한 이내에 종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당사자는 다시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

(6) <u>제12조</u> 및 <u>제13조</u>에 따른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본 조에 따른 우선매수권 은 적용되지 아니하다.

제11조 메리츠의 풋옵션(Put Option)

- (1) 메리츠는 본건 우선주식 납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메리츠 풋옵션행사기한")에 메리츠가 보유하는 본건 SPC(본건 합병 이후에는 대상회사를 의미하고,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함) 발행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메리츠 풋옵션대상주식")를 매수할 것을 HPS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메리츠 풋옵션")를 가진다.
- (2) 메리츠가 메리츠 풋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메리츠 풋옵션행사기한 이내에 HPS에게 (i) 메리츠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취지, (ii) 메리츠 풋옵션 대상주식의 종류 및 수를 기재한 서면 통지("메리츠 풋옵션행사통지")를 하여야 한다.
- (3) 본 조에 따른 메리츠 풋옵션의 행사대금("메리츠 풋옵션행사대금")은 메리츠 풋옵션대상주식의 내부수익률을 10%로 만드는 금액으로 한다. 단, 내부수익률 계산시, (i) 메리츠가 메리츠 풋옵션대상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HPS가 메리츠에게 메리츠 풋옵션행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ii) 기배당 혹은 기지급금액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실제 수령 시점에 미리 분배를 받은 것으로 보아 현금유입으로 계산하고, (iii) 별도의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4) 메리츠가 메리츠 풋옵션행사기한 이내에 메리츠 풋옵션행사통지를 HPS에 게 발송한 경우, HPS가 메리츠 풋옵션행사통지를 수령한 날에 메리츠와 HPS 사이에 해당 메리츠 풋옵션행사대금으로 메리츠 풋옵션대상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5) 메리츠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거래의 종결은 제(4)항에 따라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다만, 메리츠 풋옵션대상주식의 매매를 위하여 사전에 받아야 하는 정부기관 인허가의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되고, 해당당사자들은 상호 합의로 종결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HPS는 위 일자에 메리츠에게 당해 메리츠 풋옵션행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메리츠는 그와 동시에 HPS에게 당해 메리츠 풋옵션대상주식을 여하한 제한부담이 없는 상태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12조 E1의 풋옵션(Put Option)

- (1) 제10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E1은 거래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E1 풋옵션행사기한")에 E1이 보유하는 본건 SPC(본건 합병 이후에는 대상회사를 의미하고,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함) 발행 보통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E1 풋옵션대상주식")를 매수할 것을 HPS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E1 풋옵션")를 가진다.
- (2) E1이 E1 풋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E1 풋옵션행사기한 이내에 HPS 에게 (i) E1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취지, (ii) E1 풋옵션대상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 통지("E1 풋옵션행사통지")를 하여야 한다.
- (3) 본 조에 따른 E1 풋옵션의 행사대금("E1 풋옵션행사대금")은 E1 풋옵션대 상주식의 수에 그 1주당 발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명확히 하면, 본 건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본건 합병 전후로 E1 풋옵션의 가치가 동일하 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 1주당 발행가액을 조정하기로 함).
- (4) E1이 E1 풋옵션행사기한 이내에 E1 풋옵션행사통지를 HPS에게 발송한경우, HPS가 E1 풋옵션행사통지를 수령한 날에 E1과 HPS 사이에 해당 E1 풋옵션행사대금으로 E1 풋옵션대상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것으로 간주된다.
- (5) E1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거래의 종결은 <u>제(4)항</u>에 따라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다만, E1 풋옵션 대상주식의 매매를 위하여 사전에 받아야 하는 정부기관 인허가의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에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되고, 해당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로 종결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HPS는 위 일자에 E1에게 당해 E1 풋옵션행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E1은 그와 동시에 HPS에게 당해 E1 풋옵션대상주식을 여하한 제한부담이 없는 상태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13조 HPS의 콜옵션(Call Option)

- (1) 제10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HPS는 거래종결일로부터 2년 이내("<u>콜옵션 행사기한</u>")에 E1이 보유하는 본건 SPC(본건 합병 이후에는 대상회사를 의미하고,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함) 보통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u>콜옵션대상 주식")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u>
- (2) HPS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행사기한 이내에 E1에게 (i)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취지, (ii) 해당 콜옵션대상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 통지("콜옵션행사통지")를 하여야 한다.
- (3) 본 조에 따른 콜옵션의 행사대금("<u>콜옵션행사대금</u>")은 콜옵션대상주식의 수에 그 1주당 발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명확히 하면, 본건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본건 합병 전후로 콜옵션의 가치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 도록 그 1주당 발행가액을 조정하기로 함).
- (4) HPS가 콜옵션행사기한 이내에 콜옵션행사통지를 E1에게 발송한 경우, E1 이 콜옵션행사통지를 수령한 날에 HPS와 E1 사이에 해당 콜옵션행사대금으로 해당 콜옵션대상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 (5) 콜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거래의 종결은 제(4)항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다만, 콜옵션대상주식의 매매를 위하여 사전에 받아야 하는 정부기관 인허가의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에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되고, 해당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로 종결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콜옵션을 행사한 HPS는 위 일자에 E1에게 당해 콜옵션행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E1은 그와 동시에 HPS에게 당해 콜옵션대상주식을 여하한 제한부담이 없는 상태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확약사항 등

제14조 본건 SPC의 운영 등

- (1) 투자자들은 본건 SPC로 하여금 자회사 등에 대한 관리 및 컨설팅 사업을 포함한 기타 사업(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는 투자자들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하여 정하기로 함)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본건 SPC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본건 SPC로 하여금 직원 약간 명을 고용하도록 한다.
- (2) HPS는 본건 SPC의 주주로서 대상회사가 운영하는 발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 본건 거래 관련 비용의 정산

본건 거래 관련 비용(자문사 비용, 본건 거래 관련 세금과 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함)은 본건 SPC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체결 후 본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등으로 거래종 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각 투자자가 본건 거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6장 진술 및 보장

제16조 진술 및 보장

각 당사자(제16.5조의 경우 HPS 및 본건 SPC에 한함)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아래와 같이 다른 당사자들에게 진술 및 보장한다.

16.1 법인 및 권한.

(1) 각 당사자는 (i)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



속하며, (ii)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 및 자격을 가지고 있다.

(2)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격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권하을 가지고 있다.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해당 당사자의 모든 필요한 내부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되었다.

16.2 집행가능성.

본 계약은 각 당사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해당 당사자에 대하여 본 계약의 조건들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구성한다.

16.3 동의: 위반사항의 부존재.

각 당사자에 의한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i) 해당 당사자의 정관에 위반되거 나, (ii) 해당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법령 또는 정부승인에 위반되거나, (iii) 해당 당 사자가 당사자인 중요한 계약 또는 해당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는 중요한 의무와 관련하여 그 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을 구성하거나 기하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아니 한다(상대방 계약당사자,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통지, 결정 또는 결의나 일정 기간 의 경과시 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을 구성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를 포함함).

규제요건. 16.4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어느 당사자가 획득하거나 충족되어야 하는 동의, 승인, 허가, 수권 등의 요건은 모두 획득되고 충족되었거 나, 획득 또는 충족될 수 있다.

16.5 본건 SPC.

- (i)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본건 SPC의 총 발행주식은 액면금액 금 5,000원 (1) 의 보통주식 1,280주로 HPS가 전부 소유하고 있고, (ii) 본건 SPC의 발행 주식은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 완납되었고 추가 납입의무는 없으 며, (iii)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위 (i)의 보통주식 외에 주식 등을 발행 또는 부여하거나 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다.
-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본건 SPC는 2024. 5. 14. 설 (2)



립된 이래 여하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바 없고, 우발채무나 부외부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7장 계약의 효력기간 및 손해배상

제17조 계약의 효력 및 종료

17.1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u>제3조</u> 내지 <u>제14조</u>는 거래종결이 이루어질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거래종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7.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1) 본 계약은 당사자들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다.
- (2) 본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체결 후 본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등으로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 (3) 본 계약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본 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고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i) 어느 당사자("위반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중대한 측면에서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u>해지 당사자</u>")로부터 서면에 의한 시정 요청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해지 당사자는 위반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ii)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거나 이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 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 (ii) 채권단에 의한 워크아웃 또는 이



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또는 (iii) 발행 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위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당사자들 전원이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본건 SPC 발행 주식 등을 모두 처분하여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17.3 해제 또는 해지의 결과.

- (1)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보유한 당사자가 서면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일방 당사자에게 이미 발생한 권리 및 책임은 계속하여 존속한다.
- (2)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u>제15조</u> 및 <u>제17조</u> 내지 <u>제20조</u> 기타 그 성격상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실효 후에도 적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건과 규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18조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모든 손해(지연이자, 소송비용,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 정하지 아니함)를 배상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면, 어느 당사자의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본건 거래를 위해 지출한 비용·수수료, 계약금 몰취를 포함하여 본건 주식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하나파워패키지에 대한 손해배상, 본건 보증보험의 보험사에 대한 구상의무 등으로 인해 다른 당사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포함함)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장 일반조항

제19조 비밀유지

(1)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당사자들은 다음의 정보를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하고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i) 본 계약(본 계약에 따라 체결된 부수 계약 또는 합의를 포함하며, 이하 본 조에서 동일)의 내용.
- (ii) 본 계약과 관련한 협상의 내용.
- (iii) 본 계약 및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 받은 본건 SPC 및 대상회사 에 관한 모든 비밀 서류와 정보
- (2) <u>제(1)항</u>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의 공개가 허용된다.
 - (i)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 (ii)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에서 공개가 요구 되는 경우.
 - (iii) 본 계약의 이행 및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 공개되는 정보에 관하여 본 계약 당사자와 마찬가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직원, 자문사. 계열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iv) 어느 투자자의 본건 거래를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 공개되는 정보에 관하여 본 계약 당사자와 마찬가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당 투자자에 대한 잠재적 투자자(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기타 공동투자자 등을 포함함)에게 공개하는 경우
 - (v) 본 계약 위반 없이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된 경우

다만, <u>제(i)호</u> 또는 <u>제(ii)호</u>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당사자는 상대 방 당사자들이 (x) 그 공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y) 공개의 시기 및 내용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상대방 당사자들에게 즉시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 등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당사자들은 제(2)항 제(iii)호 또는 제(iv)호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은 자로 하여금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직접 부담한다.



제20조 기타 규정

20.1 완전합의.

본 계약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로서, 본 계약 체결 시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서면 또는 구두의 합의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고 본 계약으로 대체된다.

20.2 변경.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20.3 포기.

본 계약상 권리나 구제수단의 포기는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보유한 당사자가 그 취지를 명시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할 수 있고, 그 서면에 명시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다른 여하한 권리나 구제수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떤 권리나 구제수단의 불행사나 지연행사는 포기로 간주되지 않고, 어느 한 권리나 구제수단의 행사 또는 권리나 구제수단의 일부 행사는 다른 권리나 구제수단 또는 나머지 권리나 구제수단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20.4 양도 및 이전.

- (1)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허용되거나 예정된 경우(명확히 하면, <u>제10.1조</u> <u>제(2)항</u>, <u>제10.2조</u>에 따른 경우를 포함함)가 아닌 한, 나머지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지위 및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 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2) 본 계약상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당사자들과 전항에 따라 허용된 양수인만을 구속하고 이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본 계약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구제수단도 부여하거나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0.5 비용 및 세금.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세금 및 보수 등을 각자 부담한다.



20.6 통지.

-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와 연락은 (i)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ii) 인편, 이메일, 팩시밀리,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우편 또는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상업 서류 송달 회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2)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는 다음의 각 연락처 또는 해당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들에게 서면 통지한 다른 연락처로 발송되어야 한다.

E1에 대한 통지: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20,21층

전자메일: junggyu.park@e1.co.kr

참조: 박정규 팀장

HPS에 대한 통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34층(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전자메일: shnori@hps.co.kr

참조: 윤성호 팀장

메리츠에 대한 통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27층

전자메일: taejun.park@meritz.co.kr (박태준 부장)

참조: swhuh@meritz.co.kr (허성우 차장); taehoon.yang@meritz.co.kr (양태훈 과장)

- (3) 통지는 수령 즉시 효력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 (i)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의 경우 발송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
 - (ii) 인편 또는 상업서류 송달회사에 의한 경우 전달된 때.
 - (iii) 전자메일 또는 팩시밀리에 의한 경우 상대방에 의해 전송이 확인된 때.



20.7 가분성.

본 계약의 어느 규정(문장, 문구 또는 그 일부를 포함하며, 이하 본 항에서 동일) 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인 경우에도, 본 계약의 다른 규정의 유효성, 적법성 또는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인 규정은 당사자들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규정의 원래 내용과 취지 및 당사자들의 당초 의도와 목적에 최대한 근접하면서도 유효, 적법 또는 집행가능한 내용으로 대체된다.

20.8 복본.

본 계약은 수개의 복본으로 체결되며, 각 복본은 원본으로 간주된다.

20.9 <u>준거법 및 분쟁해결.</u>

- (1)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한다.
-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해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 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절차에 의한다.
- (3)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은 다른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본 계약 위반을 방지하고 본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하 기명 날인 또는 서명란을 위한 여백]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4부 작성하여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주식회사 이원

대표이사 구자용



[투자자간계약서 서명 페이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4부 작성하여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한국플랜트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기 선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4부 작성하여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메리츠경북에너지 주식회사

사내이사 김 이 현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4부 작성하여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경북에너지 주식회사

사내이사 김 재호



본건 SPC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 호)

당 회사는 경북에너지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Gyeongbuk Energy Corporation. 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 적)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자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 지도, 정리, 육성하는 사업
- 2.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 3. 자회사 등(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말함)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 4.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 5.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업
- 6.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 7. 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의 판매업
- 8.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 9.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10. 전력설비, 차량, 장비의 관리, 운전 및 임대사업
- 11. 건설관리 및 설비관련 서비스업
- 12.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자금차입 또는 채무보증 기타 다른 활동
- 13. 기타 위 목적의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부수되거나 도움이 되는 모든 활동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별첨 2.2(3)]

- ① 당 회사는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인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폐간, 휴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 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 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 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제1종 우선주식, 기명식 제2종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② 당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 주권, 10,000주권 및 주주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기타 단위의 주권으로 한다.

제 9 조 (우선주식의 내용)

- ① 당 회사가 발행하는 제1종 우선주식은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 1. 의결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 2.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가. 제1종 우선주식은 비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으로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0%

- 의 배당을 비누적적으로 보통주식에 앞서 우선 배당 한다. 명확히 하면, 제1종 우선주식은 제2종 우선주식과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고, 보통주식보다 우선하 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종 우선주식 및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당을 할 수 없다.
- 나. 제1종 우선주식 및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이 이루어진 후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한다. 이때, 보통주식의 주당 배당액이 제1종 우선주식의 주당 우선배당액을 초과할 경우 보통주식, 제1종 우선주식, 제2종 우선주식의 주당 배당액이 동일한 주당 배당액이 되도록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제2종 우선주식과 함께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다.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 라.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제1종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제1종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종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가. 당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내부수익률*을 10%로 만드는 금액(단, 내부수익률 계산시 기배당 혹은 기지급 금액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실제 수령 시점에 미리 분배를 받은 것으로 보아 현금유입으로 계산함)을 보통주식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분배하고, 제2종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순위로 분배한다.
- * 내부수익률은 (i) 해당 주주가 당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선택권 등 어느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교환되거나 그 주식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증권, 권리, 옵션 등)을 인수하기 위해 납입한 원금을 음수로 하고, (ii) 해당 주주가 당 회사의 투자자 지위에서 수령한 모든 금액(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 대금, 배당금, 감자대금 등을 포함하여 투자자의 자격에서 지급받은 금원을 의미함)을 양수로 하여,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의 납입일부터 각 지급 및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이자율로 할인하였을 때 (i)과 (ii)의 현재가치의 합산액이 영(0)이 되는 이자율을 의미하고, 이하 같다.
 - 나. 가호에 따라 제1종 우선주식 및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해 우선 분배한 후, 보통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를 한다. 그러한 분배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당 분배금액이 제1종 우선주식의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1종 우선주식은 보통주식, 제2종 우선주식의 주당 분배액이 동일한 주당 분배금액이 되도록 그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제2종 우선주식과 함께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 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제2종 우선주식은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 1. 의결권: 제2종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 2.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가. 제2종 우선주식은 비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으로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0%의 배당을 비누적적으로 보통주식에 앞서 우선 배당 한다. 명확히 하면, 제2종 우선주식은 제1종 우선주식과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고,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종 우선주식 및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당을 할 수 없다.
 - 나. 제2종 우선주식 및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이 이루어진 후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한다. 이때, 보통주식의 주당 배당액이 제2종 우선주식의 주당 우선배당액을 초과할 경우 보통주식, 제1종 우선주식, 제2종 우선주식의 주당 배당액이 동일한 주당 배당액이 되도록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제1종 우선주식과 함께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다.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 라.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제2종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제2종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종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가. 당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내부수익률을 10%로 만드는 금액(단, 내부수익률 계산시 기배당 혹은 기지급금 액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실제 수령 시점에 미리 분배를 받은 것으로 보아 현금유입으로 계산함)을 보통주식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분배하고, 제1종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순위로 분배한다.
 - 나. 가호에 따라 제2종 우선주식 및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해 우선 분배한 후, 보통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를 한다. 그러한 분배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당 분배금액이 제2종 우선주식의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2종 우선주식은 보통주식, 제1종 우선주식의 주당 분배액이 동일한 주당 분배금액이 되도록 그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제1종 우선주식과 함께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가 있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주식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종류주식의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배정받는 주식은 무상증자의 경우 동종의 우선 주식으로 하고, 유상증자 및 주식관련사채 발행의 경우 당 회사의 이사회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로 한다.
- ④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중간 배당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주식의 명의개서)

- ①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 재산의 표시)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14조(주권의 재발행)

- ①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주권의 오손 등의 사유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 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준일)

- ① 당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당해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 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의 신고)

주주, 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성명, 주소 및 인감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시기)

- ① 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0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2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및 이사회

제24조(이사와 감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인으로 하고, 감사는 1인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 규정된 집중 투표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6조(감사의 선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의 선임에 있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 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7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하되,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최종 회계연도 종료 후 당해 회계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8조(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된다.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의장)

- ①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이사회의 결의)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주식 또는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또는 부여
 - 3. 주식의 분할, 병합, 종류의 변경
 - 4.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나 중요한 영업용 자산의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5.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공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가 아닌 당회사와 김천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의 계열회사, 주주, 임직원 및/또는 그 각각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6. 김천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주식 보유를 위한 지주사업 외 신규 사업의 추진, 사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포기, 중단 또는 기존 사업의 중요한 변경
 - 7. 해산 또는 청산, 파산 또는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
 - 8. 법령상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 9. 법령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 10. 김천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이사회 결의사항에 관하여 김천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진행되는 경우 김천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당 회사의 의결권 행사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1. 제3자 배정 방식의 주식 또는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또는 부여
 - 2. 특정 주주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는 주식의 분할, 병합, 종류의 변경
 - 3. 특정 주주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는 배당, 자본 감소, 자기주식 취득 기타 자본의 환급
 - 4. 김천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가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이사회 결의 사항에 관하여 김천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진행되는 경우 김 천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당 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32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검사하며, 법령 및 주주총회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제34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

이사 및 감사의 보수(퇴직금 포함)와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장 계산(計算)

제35조(영업연도)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당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 전부터 제36조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전항의 서류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익잉여금)

당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38조(이익 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배당할 신주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제39조(중간배당)

- ① 당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한도 등에 대해 서는 상법 등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2024. 5. 10.)

제1조 (최초의 영업연도)

당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당 회사의 설립 발기인의 성명, 법인번호와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한다.

제3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2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10.)

제1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경북에너지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34층 (여의도동, 정국경제인연합회회관)

발기인(1,000주) 한국플랜트서비스 주식회사 131111-0040574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34층 (여의도동,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대표이사 강기석 (인)

본건 대출약정서